

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(안)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)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(이하 '월액여비'라 한다)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,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.
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·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 3 조(국내여비규정의 준용)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,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

1. 제8조제1항·제3항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'소속 장관'은 각각 '도지사'로 본다.
2. 제8조제3항중 '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'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'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'는 없는 것으로 본다.
3. 제17조제3항 단서중 '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'는 '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'로 '동규정 제21조'는 '동규칙 제17조'로 본다.

4. [별표 1]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「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규정」은 「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」으로,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「전문직공무원규정」은 「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」으로,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「공무원보수규정」은 「지방 공무원보수규정」으로 본다.

제 4 조 (국외여비규정의 준용)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 여비규정을 준용하되,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 한다.

1. 제8조제1항의 「소속장관」은 「도지사」로 본다.
2.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3. 제21조 및 제26조제4항중 「소속장관」은 각각 「도지사」로 본다.
4. 제24조제1항 단서중 「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」은 「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」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